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 고광민 의원입니다.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현재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
토지등소유자가 ‘정비계획 입안 요청’을 하는 경우,
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데,
‘정비계획 입안’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 및
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주민동의율이 필요합니다.
한편,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‘정비계획 입안 제안’을 할 경우에는
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
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정비사업 준비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
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
동의율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.
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‘정비계획 입안 제안’ 시 요구되는
동의율을 기존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어
보다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